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36

발의연월일: 2021. 2. 9.

발 의 자:권영세·김용판·김 웅

김은혜 · 김태흠 · 박대수

박성민 • 박수영 • 성일종

윤창현 • 이명수 • 정동만

정찬민 · 조수진 · 조태용

지성호 • 태영호 • 한무경

허은아 • 황보승희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또한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 도 충분히 보장토록 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2조의 4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등: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 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등: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 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

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 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을 받아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등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감염병 재난에 따른
	<u>손실보상) ① 정부는 「재난</u>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u>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u>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 영
	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
	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
	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u> 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의</u>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금액</u>
	2.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

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차액)의 100분의 30 이상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출손 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 인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 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 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손실액을 책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지 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